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63
----------	-------

발의연월일 : 2026. 1. 30.

발 의 자 : 최은석 · 김기현 · 김성원
서지영 · 이종욱 · 서일준
김정재 · 진종오 · 최수진
안철수 · 김 건 · 배현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청장 등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놀이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물놀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각각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6조의14, 제66조의15 신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14 및 제66조의15를 각각 제66조의16 및 제66조의17로 하고, 제8장에 제66조의14 및 제66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14(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각각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각각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66조의15(물놀이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계곡, 하천, 댐,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민물 등 물놀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제4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영업구역 또는 영업시설
2.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 또는 영업시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영업시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구역을 변경하거나 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 해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물놀이구역이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

놀이구역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물놀이 안전시설의 종류, 형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6조의14(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각각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u>

<신 설>

각각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15(물놀이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계곡, 하천, 댐,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민물 등 물놀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제4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영업구역 또는 영업시설
2.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 또는 영업시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영업시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구역의 변경하거나 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 해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물놀이구역이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구역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u>제66조의14</u>(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생략) <u>제66조의15</u>(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생략)	<u>다.</u> <u>④ 제3항에 따른 물놀이 안전시설의 종류, 형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66조의16</u>(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행 제66조의14와 같음) <u>제66조의17</u>(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현행 제66조의15와 같음)
---	---